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8 선고 2021가단52413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다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유진

변 론 종 결 2022. 7. 4.

판 결 선 고 2022. 8. 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5. 2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12,909,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9,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21. 9. 7. 기준 채무자 D에 대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다. 위 채권은 2016. 7. 1.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5. 1.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2019. 6. 7.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갑 1 내지 4, 다툼 없다].
- D의 부친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9. 5. 17.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및 피고, D, G, H 등 4명의 자녀가 있다[갑 6(가치번호 포함)]. D의 상속지분은 2/11 이다.
-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9. 피고 앞으로 2019. 5.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② 2021. 8. 2.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0만 원)이 말소되었고,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③ 2021. 8. 31. 주택도시보증공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접수번호: 제18092호)이, ④ 같은 날 I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신탁등기(접수번호: 제18093호)가 각 경료되었다[갑 5].
-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20. 5. 25. 작성되었다[갑 12].
-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외에는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다[2021. 11. 22.자 사실조회회신].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D로서는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1분의 2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하게 상속받아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채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고, 달리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D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이 형제간 및 부모 자식 사이에 또는 자식의 도리상 이루어졌다 하여 다르게 볼 수는 없다[오히려, D이 위와 같이 자식 및 형제의 도리를 다할 요량이었더라면, 약간의 비용을 들여 법률상담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받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말한다)이 악의(惡意)가 아니라는 점, 즉 D이 저지른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잘 알지 못한 채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다(위 대법원 2014다4701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는 다시, 사실은 피고가 망인의 각종 생활비와 병원비, 세금을 부담하는 등 홀로 부양해 왔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망인의 사망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단독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혹은 D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면서 감히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하고 악의로서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한 이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1) 사해행위 취소: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해행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불가능: 사해행위 이후 기설정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추가로 근저당권도 설정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가액배상을 명한다.

(3) 가액배상금의 산정

○ 부동산 가액: 상속인간 실질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20. 5. 25.에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 8. 31. 기준 신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설정금액이 9,600만 원이고,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부동산의 시세보다는 하회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위 설정금액을 상회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실질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시기 사이의 간격이 1년에 불과한 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 5. 25.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역시 적어도 9,600만 원 정도는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9,600만 원으로 인정한다.

○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금액: 공동담보였고 채권최고액이 2,500만 원이다. 위 금액을 뺀다.

○ 채무자 D의 상속분: 12,909,090원 $\{=(96,000,000 - 25,000,000) \times 2/11\}$, 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

○ 원고의 채권액: 2021. 9. 7. 기준 26,354,999원

○ 가액배상 인정금액: D의 상속분 내에서 적은 금액인 12,909,090원 인정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킨다.

판사 서영호

별지